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9. 12. 26.**

#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1장 총 칙

**제1조(가이드라인의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원칙과 절차 등을 제공하여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인터넷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상의 정의를 따른다.

1.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란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에게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등 전송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 Provider)”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CDN: Content Delivery Network)”란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디지털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 간에 체결하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적용된다.

## 제2장 이용계약을 위한 절차 및 조건

**제4조(계약의 원칙)**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콘텐츠제공사업자, 콘텐츠 전송네트워크 사업자(이하 “이용계약 당사자”라 한다)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이용계약 당사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정신에 입각하여 협상한다.
2. 이용계약의 당사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 사업자의 거래상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다.
3. 계약의 규모, 내용 등이 유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비차별적으로 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5조(서면계약)**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요청은 상호 신뢰를 도모하고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인 해결을 위하여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계약서 작성 원칙)**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계약 당사자 및 제3자가 쉽고,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포함한다.
3. 인터넷망 이용계약서는 전송용량, 이용기간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정보의 제공)** ① 이용계약 당사자 간에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터넷망 이용대가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함께 제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상대방은 이에 응한다.

### 제3장 불공정 행위

**제8조(불공정 행위 유형)** ① 이용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계약으로 볼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계약내용 만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
  2. 상대방이 제시한 안에 대해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을 지연·거부하는 경우
  3. 상대방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와의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4. 이용계약 당사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 ② 이용계약 당사자는 본인이 체결한 다른 이용계약 조건과 비교하여 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인터넷망 이용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 ③ 이용계약 당사자는 합의사항 일체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이면계약을 요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조건을 설정하지 않는다.

**제9조(부당성 판단기준)** 제8조에 따른 인터넷망 이용계약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1. 인터넷망 구성 및 비용분담 구조
2. 콘텐츠 경쟁력, 사업 전략 등 시장 상황
3. 대량구매·장기구매 등에 의한 할인율
4.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제3의 이용계약이 있는 경우 그 대가 산정에서 고려한 요소와 산정방식 등

### 제4장 이용자 보호

**제10조(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의 의무)**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서비스 이용자와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체결한 콘텐츠제공사업자, 콘텐츠전송네트워크사업자(이하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콘텐츠제공사업자 등 계약 상대방과 협의한다.

③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1조(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의 의무)** 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인터넷 트래픽의 경로 변경, 트래픽 급증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②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변경 또는 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제5장 보 칩

**제12조(관련 법령의 준수 등)** ①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인터넷망 이용계약을 위한 협상,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또는 이용자의 권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 기한)** 동 가이드라인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제정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